

이 보도자료는 2016. 10. 18. 조간용으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조재연
전화 02-3219-4323 / 팩스 02-3219-4222

검찰
PROSECUTION SERVICE

보도자료 2016. 10. 17.

자료문의 : 금융조사제2부
전화번호 : 02-3219-2442
팩 스 : 02-3219-2585
주책임자 : 부장검사 박길배

제 목 자본시장의 불공정게임 미공개정보이용 집중단속 결과 - 중국계 회사의 M&A 테마株에 편승한 불공정거래사범 등 대거 적발 -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최근 각종 테마株에 편승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행 수법도 은밀·조직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당이득도 크게 증가 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금년 6월부터 미공개정보 이용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음 (총 5건 수사)
- 수사 결과, ① 중국 패션·잡화 기업이 국내 코스닥상장 유아의류기업을 M&A하는 과정에서 주식매매로 약 3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저축은행장 출신 M&A 브로커를 구속하고, ②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가 국내 코스닥상장 온라인교육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주식매매로 약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중국인 2명을 구속하였으며, ③ 연예기획사의 유명 방송인 영입 정보를 이용한 소속 연예인, ④ 제약회사의 신규 투자 정보를 이용한 내부 직원, ⑤ 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등기업무 중 그 정보를 이용한 법무사를 각 약식기소 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사범 19명을 적발·엄단하였음
- 불공정거래사범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을 전액 추징 보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전액 박탈하고, 불공정거래 사범들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하여도 함께 기소함으로써 범죄유인을 차단 하는데 주력하였음
- 이번 수사를 통해 공정한 게임의 룰을 위반하여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불공정거래사범을 엄단하였는바,
 - 향후 금융수사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실시간 대응하고, 집중 단속 체제를 유지하여 건전한 금융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 ☑

1

미공개정보이용 범죄 집중 단속 의의

① 다양한 유형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적발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최근 유관기관에서 검찰에 접수된 미공개 정보이용행위 사건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중국계 회사의 M&A, 연예인 영입정보 등 각종 테마株에 편승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성행하는 것에 주목하여 6월부터 미공개정보 이용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 ※ 2016년 상반기 금융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 통보 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사건은 총 20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약 42% 증가하였음
-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① 중국계 회사의 국내 상장회사 M&A 정보를 이용한 국내 브로커 및 내부자인 중국인들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②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유명 방송인 영입 정보를 이용한 소속 연예인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③ 제약회사의 신규 투자 진출 정보를 이용한 내부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④ 회사의 합병시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사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 다양한 유형 및 경로의 미공개정보이용 범행을 적발하였음
- 특히, 최근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M&A가 급증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이에 관여한 중국인들이 정보의 불균형 상황을 이용하여 주식 거래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중국인 2명을 구속 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 2016. 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M&A 건수는 전년대비 3배인 33건, 거래액은 128% 증가한 19억 3,000만 달러(약 3조 726억 원)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중국의 한국 기업 M&A 64건 중 70%가 최근 2년 사이에 이루어졌음

②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적기·신속한 수사를 통한 혐의 입증

-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의 경우, 내부자 및 정보수령자 간 정보 전달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상호 긴밀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증거인멸이 용이한 사건의 특성상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움

- 본 수사 대상 사건도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자금원 및 불법수익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금세탁 등 범행 은폐 시도가 있었고, 특히 중국계 회사의 M&A 정보 이용 범행의 경우 정보의 생성 및 유통 경로가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져 증거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음
- 금융당국과 검찰은 신속한 수사 착수와 압수수색 등 적시의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피의자들의 전원 자백을 이끌어 내어 입증에 어려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실제진실을 명확히 밝혀내었음

2 중국계 그룹과 국내 상장사 M&A 브로커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1 사건 개요 (별첨 『피고인별 처분내용』 참조)

- M&A브로커인 A○○은 '14. 8. 20. 국내 유아의류업체 甲회사의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중국 패션·잡화 기업 회장에게 대주주 주식(15.3%) 및 경영권을 약 320억 원에 매각하는 M&A를 중개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14. 8. 21. ~ 9. 2. 공시 직전까지 甲회사 주식 총 1,336,594주(77억 5,571만원 상당)를 매수하고 '14. 9. 2. 공시 이후 전량 매각하여 총 32억 9,803만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 자신이 회장인 4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직원 및 지인 명의의 차명 증권 계좌를 동원하여 주식 총 513,042주(29억 6,624만원 상당)를 매수하고, 회사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총 823,552주(47억 8,947만원)를 매수
- A○○은 위 4개 회사의 직원 B○○, C○○,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차명 증권 계좌로 취득한 주식매매 차익을 허위 투자약정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되돌려받음 [범죄수익은닉법위반]
- B○○, C○○, D○○은 '14. 8. 26.~9. 2. A○○으로부터 M&A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하여 각각 7,009만원, 2,378만원, 753만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 등



2 주요 수사 경과

- '16. 5. 27. 금융위원회 고발 (A○○ 외1)
- '16. 6. 16. A○○의 4개 운영회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6. 7. 10./7. 14. A○○ 구속영장 청구/발부
- '16. 7. 26. 1명 구속기소, 4개 법인 및 2명 불구속 기소, 3명 구약식

3 범행 특징 및 수사 의의

가. 중국계 그룹의 국내 유명브랜드 업체 인수를 틈탄 범죄

- M&A브로커 A○○은 저축은행장 경력 및 중국측 인맥을 동원하여 중국 패션·잡화 기업이 1979년 국내 최초로 유아의류사업을 시작한 업계 1위업체인 甲회사를 인수하도록 하고 미공개 M&A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 본건은 각종 이권이 개입하는 기업 M&A 과정에서 야기되는 비리 중 M&A브로커의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으로서 최근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M&A가 급증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단속·주시할 범행임

나. 거액의 회사자금 인출하여 차명 증권계좌 동원하는 등 조직적 범죄

- M&A브로커 A○○은 자신이 지배하는 4개 회사에서 회사자금 총 51억 원을 인출하여 부하직원 및 지인 명의로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하여 본건 주식을 구입하고 공시 이후 매매 차익으로 회사자금을 메워놓았음
- A○○ 및 명의대여자들은 금감원 조사 당시 차명 증권에 대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자들이 스스로 계산주체로서 주식 거래한 것이라고 입을 맞추어 허위 진술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으나 검찰 조사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음

다. 거액의 주식매매 차익을 은폐하기 위한 자금세탁

- M&A브로커가 차명 증권계좌로 취득한 매매차익은 14억원이 넘는 거액으로 브로커와 차명증권 명의자들은 허위의 투자약정서, 차용증 등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투자금, 차용금을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법 수익을 은닉하였음
- 뿐만 아니라 A○○은 회사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도 마치 차명증권 명의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대여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대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 허위 소비대차계약서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였음

라. 범죄수익환수 철저

- A○○ 등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금융계좌를 동결하거나 자진납부 받는 등 재산을 확보하여 추정보전조치를 취하였고 향후 은닉한 차명재산을 계속 추적하여 불법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임
- 이러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통해 미공개정보이용 부당이득 취득 비리를 근절시키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실효성을 도모하였음

마.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활용

-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부장검사와 주무검사가 팀 수사를 통해 내사 착수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하여 수사과정의 방향을 모색하고 수사 결론을 함께 도출하는 대검이 추진하는 수사시스템임

- 본건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통해 압수수색 이후 약 1개월의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주범을 구속하고 총 9명을 추가 인지하였고 사건 관계자들은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는 등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의 장점을 재확인

3

연예기획사의 유명 연예인 영입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

1 사건 개요 (별첨 『피고인별 처분내용』 참조)

- 乙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G○○은, '15. 7. 16.경 乙연예기획사 임원으로부터 '乙회사와 유명 방송인 P○○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인 '15. 7. 16. 09:00경 전후로 乙회사 주식 11,000주(236,119,200원 상당)를 매수한 후 보유하여 불상의 부당이득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 乙연예기획사 임원의 지인 H○○는, 15. 7. 16.경 위 임원으로부터 「乙회사와 유명 방송인 P○○ 전속계약 체결 정보」를 전해 듣고 공개되기 직전인 '15. 7. 16. 09:00경 전후로 乙회사 주식 9,966주(216,850,400원 상당)를 매수하여 부당이득 3,500만원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2 주요 수사 경과

- '16. 5. 4. 금감원 패스트 트랙 통보
- '16. 6. 1. ~ 6. 3. 관련자 주거지 및 乙연예기획사 사무실 압수수색
- '16. 6. 3. ~ 6. 28. 乙연예기획사 대표, 임원 등 관련자 조사
- '16. 6. 30. 피의자 2명 약식 기소('16. 8. 11. 약식명령 확정)

③ 범행 특징 및 수사 의의

가. 고위 임원을 통해 극소수만 아는 유명 연예인 영입정보가 새어나간 사례

- 본건 유명 연예인의 영입 사실은 연예기획사 내에서 대표이사 등 2~3명의 극소수 임원만 관여하는 등 회사 내에서도 극비로 다루어지는 정보였음
- 본건은 유명 연예인 전속계약이 자정 무렵 확정되자마자, 당일 새벽에 연예기획사의 고위급 임원이 지인인 G○○, H○○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였고, 이를 받은 G○○, H○○이 주식시장 개장 무렵부터 주식을 적극 매수한 사안임

나. 신속한 적시의 강제 수사를 통해 정보유통 경로가 정확히 규명된 사건

- 통상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경우, 미공개정보 유출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간 정황이 확실하더라도, 어떤 내부자가 무슨 경로를 통해 정보를 유통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기 어렵고 범죄사실의 규명 및 입증에 매우 곤란하다는 특성 존재
- 본건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검찰에 통보하였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자금추적을 거쳐 적기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함으로써 범죄사실 전반을 명확히 규명하였음
- 증거가 은닉·소실되기 전에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함으로써 본건 미공개정보가 새벽에 전화로 전달된 사실을 입증하여 관련자 전원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음

다. 유명 연예기획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의 자정노력을 이끈 사례

- 본건은 상장법인인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연예인 영입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 사례로서, 해당 연예기획사가 미공개 정보의 유통·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함
- 향후 연예기획사들의 미공개정보 유출 정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으로, 다른 기획사들의 내부 통제시스템도 정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4

중국계 게임회사의 국내 상장법인 인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

① 사건 개요 (별첨 『피고인별 처분내용』 참조)

-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국내 온라인 교육업체인 코스닥 상장법인 丙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 전환사채 참여 업무시 위 정보를 지득한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의 국내 자회사 소속 중국인 직원 J○○, K○○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15. 2. 4. 丙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1억 9,000만원, 2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 각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 위 인수를 증명한 국내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L○○이 매제 M○○에게 위 정보를 제공하여 M○○이 '15. 2. 5. 丙회사 주식을 매수토록 함으로써 부당이득 1억 9,700만원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 위 중국 회사는 年매출 9천억원 규모의 중국 북경 소재 대형 모바일게임 개발회사임

② 주요 수사 경과

- '16. 3. 금융위원회 통보
- '16. 9. 1. 丙회사 사무실 및 피의자들 주거지 압수수색
- '16. 9. 8. 중국인 J○○, K○○ 각 구속영장 발부
- '16. 9. 23. 피의자 4명 기소, 피의자 1명 기소중지

③ 범행 특징 및 수사 의의

가. 중국계 자본의 국내 진출 과정에서 중국인이 직접 미공개정보를 이용

- 중국 대형 모바일 게임회사가 국내 코스닥법인 丙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업무 등에 참여한 중국인 2명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직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임

- 최근 중국계 자본의 국내 법인인수 등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이에 관여하는 중국인들이 정보의 불균형 상황을 이용하여 주식 거래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 향후 중국계 자본의 국내 진출 과정에서 유사한 범행이 없는지 금융당국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

나. 중국계 회사의 M&A 과정에서 이를 증개하는 내국인(브로커)의 도덕적 해이

- 중국계 자회사 직원(중국인)들 뿐 아니라, M&A 과정에서 증개 역할을 한 브로커도 친인척에게 그 정보를 알려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하였음
- 중국계 회사의 국내 진출시 이를 매개하는 내국인 브로커가 존재하는바, 국내 유아의류업체 M&A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사건과 마찬가지로 브로커들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빈번히 나서고 있음이 재확인된 사례임

다. 주요 참고인들이 중국인으로 증거은닉이 용이하였으나, 적기의 강제수사 등을 통해 범행 전반을 명확히 규명하고 자백을 이끌어낸 사건

- 본건은 정보의 생성 장소, 유통경로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주요 참고인 및 차명계좌 명의자가 중국인인 등 증거인멸이 매우 용이하고, 관련자들 간 진술을 맞추는 등 허위 진술을 해 온 사건임
- 중국인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주식매수 자금원 및 사용처 등에 대한 면밀한 계좌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의 허위 진술을 원천 차단하고, 묻히기 쉬운 실체적 진실을 밝혀냄

라. 추정보전을 통한 부당이득액 전액 환수

- 중국계 자본의 국내 진출의 이면에서, 중국인들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통해 사실상 국부를 중국으로 유출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음
- 부당이득액 중 일부는 중국으로 송금되었으나, 피의자들의 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 추정 보전함으로써 부당이득 전액을 국고로 환수할 예정

5 제약회사의 신규사업 투자 진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

① 사건 개요 (별첨 『피고인별 처분내용』 참조)

- 제약회사 丁의 직원인 N○○은, '15. 1. 15. 丁회사의 의료기기업체 출자를 통한 신규 사업 진출 업무를 직접 진행·관여하면서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공시('15. 1. 15. 19:09) 직전 丁회사 주식 4,000주(1억 1,000만원 상당)를 매수한 후 보유하여 불상의 부당이득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 ※ 丁회사 : 의약품제조 및 판매업, 코스닥상장사, 매출액 813억원

② 주요 수사 경과

- '16. 5. ~ 6. 참고인 등 관련자 수사
- '16. 7. 11. N○○ 조사 (자백)
- '16. 7. 13. 피의자 약식 기소 ('16. 8. 24. 약식명령 확정)

③ 범행 특징 및 수사 의의

가. 제약회사 내부 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직접 이용

- 본건은 제약회사 내부에서 직접 신규 투자 업무를 수행하던 회사 직원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전형적인 유형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임
- 비록 주식을 바로 매각하지 않아 부당이득액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으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사례임을 감안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 받음

나. 전형적인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메시지 전달

- 본건은 미공개정보를 자주 접하는 직장인들이 스스로 소규모 거래를 하는 등 전형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 및 적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음
- 금융당국 및 검찰은 소규모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식시장에 전달함

6 직업윤리를 망각한 법무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1 사건 개요 (별첨 『피고인별 처분내용』 참조)

- ○○○은 법무사로서, '15. 9. 11. 戊회사가 유명 여자 연예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그 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戊회사 주식 19,941주(1억 900만원 상당)를 미리 매수하여 1,700만원의 부당이득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 ※ 戊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화장품 제조·판매업 영위

2 주요 수사 경과

- '16. 5. 25. 금융위원회 통보
- '16. 9. 27. ○○○ 조사 (자백)
- '16. 10. 11. 피의자 약식 기소

3 범행 특징 및 수사 의의

가. 법무사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 사례

- 본건은 법무사가 본연의 업무인 인수합병계약서 검토 및 등기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정보를 지득하자,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도덕적 해이 사례의 전형임
- 유명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와 인수·합병할 경우 '연예인 테마주'로 분류되어 주가가 급등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본건 수사에 착수함

나. 준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회사 내부자에 준하는 엄벌이 필요

- 본건은 코스닥 상장법인과 등기업무 위임 등의 계약을 체결한 법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안으로 준내부자의 범행임

- 준내부자는 상장 법인 내부의 내밀한 정보를 취득하기에 용이하므로 상장법인 임직원에 상응하는 법률상 책임이 있음에도, 준내부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본건의 경우에도, 준내부자에 해당하는 법무사가 법규 준수 의식이 희박한 나머지 자신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등 금융감독 당국·수사기관의 단속 및 적발을 염두에 두지 않는 행태를 보였음
- 금융당국 및 검찰은 회사 내부자가 아니면서도 계약관계로 인해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준내부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향후에도 엄단함으로써 유사사례를 방지해 나갈 예정임

7 향후계획

- 미공개정보이용 사범은 정보의 평등성이라는 게임의 룰을 위반하여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주식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임
- 향후에도, 점점 진화하는 미공개정보 이용범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집중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면밀한 사전 모니터링, 신속한 수사 착수, 과학적 증거 수집 활동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범행은 반드시 적발·엄단된다"는 원칙을 확립·전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별첨 】

피고인별 처분 내용

순번	성 명	공소사실 요지(죄명)	처분
1	A○○ (63세, ㈜a○○ 등 회장)	'14. 8. 20. M&A 정보를 이용하여 '14. 8. 21.~9. 2. 공시 직전까지 甲회사 주식 총 1,336,594주(77억 5,571만원)를 매수하고 '14. 9. 2. M&A 공시 이후 전량 매각하여 총 32억 9,803만원 상당 부당이익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B○○, C○○, D○○, E○○, F○○공모하여, '14. 9.~'15. 12. 차명 증권 계좌로 취득한 주식매매 차익을 허위 투자약정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되돌려받음 [범죄수익은닉법위반]	'16. 7. 26. 구속기소
2	B○○ (54세, ㈜a○○ 상무)	'14. 8. 27.~9. 2. A○○으로부터 M&A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하여 2,378만원 상당 부당이익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A○○ 등과 공모하여, '14. 12. 차명 증권 계좌로 취득한 주식매매 차익을 허위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되돌려받음 [범죄수익은닉법위반]	'16. 7. 26. 불구속기소
3	C○○ (65세, ㈜a○○ 대표이사)	'14. 8. 26.~9. 1. A○○으로부터 M&A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하여 7,009만원 상당 부당이익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A○○ 등과 공모하여, '15. 12. 차명 증권 계좌로 취득한 주식매매 차익을 허위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되돌려받음 [범죄수익은닉법위반]	'16. 7. 26. 불구속기소
4	D○○ (62세, ㈜c○○ 상무)	'14. 8. 26.~8. 27. A○○으로부터 M&A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하여 753만원 상당 부당이익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A○○ 등과 공모하여, '14. 12. 차명 증권 계좌로 취득한 주식매매 차익을 허위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되돌려받음 [범죄수익은닉법위반]	'16. 7. 26. 약식기소
5	E○○ (여, 47세, ㈜a○○ 과장)	A○○ 등과 공모하여, '14. 9. 차명 증권 계좌로 취득한 주식매매 차익을 허위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되돌려받음 [범죄수익은닉법위반]	'16. 7. 26. 약식기소
6	F○○ (63세)	A○○ 등과 공모하여, '15. 12. 차명 증권 계좌로 취득한 주식매매 차익을 허위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되돌려받음 [범죄수익은닉법위반]	'16. 7. 26. 약식기소
7	(㈜a○○ 부실채권 매매 업체)	사실상 대표자인 A○○이 '14. 8. 22.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아가방 주식 564,662주를 매수하여 총 11억 8,010만원의 부당이익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16. 7. 26. 불구속기소

8	(㈜b○○ 부실채권 매매 업체)	사실상 대표자인 A○○이 '14. 9. 2.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아가방 주식 76,779주를 매수하여 총 1억 4,594만원의 부당이익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16. 7. 26. 불구속기소
9	(㈜c○○ 인력대행업 체)	사실상 대표자인 A○○이 '14. 8. 26.~9. 2.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아가방 주식 91,294주를 매수하여 총 2억 1,970만원의 부당이익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16. 7. 26. 불구속기소
10	(㈜d○○ 인력대행업 체)	사실상 대표자인 A○○이 '14. 8. 26.~9. 2.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아가방 주식 90,817주를 매수하여 총 2억 1,976만원의 부당이익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16. 7. 26. 불구속기소
11	G○○ (26세, 가수)	乙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으로서, '15. 7. 16.경 乙회사 임원으로부터 '乙회사와 유명방송인 P○○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乙회사와 P○○ 전속계약 체결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인 '15. 7. 16. 08:59:44경부터 09:02:53경까지 乙회사 주식 11,000주(236,119,200원)를 매수하여 불상의 부당이익 취득[자본시장법위반]	'16. 6. 30. 약식기소
12	H○○ (39세, 종업 원)	乙연예기획사 임원의 지인으로서, '15. 7. 16.경 乙회사 임원으로부터 '乙회사와 유명방송인 P○○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乙회사와 P○○ 전속계약 체결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인 '15. 7. 16. 08:57:48경부터 09:59:34경까지 乙회사 주식 9,966주(216,850,400원)를 매수하여 부당이익 3,500만원 취득[자본시장법위반]	'16. 6. 30. 약식기소
13	I○○ (42세, 중국인, 丙회사 이사)	丙회사의 등기이사로서, 동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15. 2. 4.경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라는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후, 동 정보가 공개('15. 2. 6. 10:28)되기 전인 '15. 2. 4.~2. 5. 기간 중 차명 계좌를 이용 주식을 매수하여 약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16. 9. 23. 기소중지
14	J○○ (31세, 중국인,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의 국내 자회사 대표)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의 국내 자회사의 사실상 대표로서, '15. 2. 4.경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가 국내 온라인 교육업체인 코스닥 상장 법인 丙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된다'는 정보를 지득하고, 차명계좌를 이용 丙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익 1억 9,000만원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 '16. 9. 8. 구속되었으나, 9. 22. 법원에서 보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하여 석방조치됨	'16. 9. 23. 불구속기소
15	K○○ (29세, 중국인,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의 국내 자회사 직원)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의 국내 자회사의 직원으로서, '15. 2. 4.경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가 국내 온라인 교육업체인 코스닥 상장 법인 丙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된다'는 정보를 지득하고, 차명계좌를 이용 丙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익 2억 4,000만원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 '16. 9. 8. 구속되었으나, 9. 22. 법원에서 보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하여 석방조치됨	'16. 9. 23. 불구속기소

16	L○○ (55세, 경영컨설 팅업체 대표)	국내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로서,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의 丙회사 인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가 국내 온라인 교육업체인 코스닥 상장 법인 丙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된다'는 정보를 지득하고, '15. 2. 4.경 매제인 M○○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 M○○으로 하여금 丙회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함 [자본시장법위반]	'16. 9. 23. 불구속기소
17	M○○ (47세, 개인사 업자)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의 丙회사 인수를 중개하고 있던 처남 L○○으로부터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가 국내 온라인 교육업체인 코스닥 상장 법인 丙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된다'는 정보를 지득하고, '15. 2. 5. 丙회사 주식 24,070주(약 6,397만원 상당)를 매수하여 약 1억 9,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16. 9. 23. 불구속기소
18	N○○ (43세, 丁회사 팀장)	제약회사 丁의 직원으로서, '15. 1. 15. 丁회사의 의료기기업체 출자를 통한 신규 사업 진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공시('15. 1. 15. 19:09) 직전 丁회사 주식 4,000주(1억 1,000만원 상당)를 매수하여 불상의 부당이익 취득[자본시장법위반]	'16. 7. 13. 약식기소
19	○○○ (39세, 법무사)	법무사로서, '15. 9. 11. 戊가 유명 여자 연예인이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계약을 검토하고 관련 등기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공시전 戊회사 주식 19,941주(1억 900만원 상당)를 매수하여 1,700만원 상당 부당이익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16. 10. 11. 약식기소